

I

신 식품표시 기준에 의한 영양성분표시

- 식품에 표기하는 영양성분표시가 종래에는 임의표시사항이었으나 2015. 4. 1.일부터 시행된 일본 소비자청의 신 식품표시제도에 따라 별도 면제되는 식품 이외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
 - 한국 국내에서는 이미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, 식염량을 식염상당량으로 계산하여 표기하여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
- 주요 변경사항
 - 식염량을 식염상당량으로 환산하여 표기 필요함(식염상당량(g)= 식염량×2.54/1,000)
 - 표시 임의항목은 포화지방산, n-3계 지방산, n-6계 지방산, 식물섬유, 당류, 당질, 콜레스테롤, 비타민, 미네랄류이나, 동 항목 중 포화지방산, 식물섬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표시를 권장
- 영양성분 표기 면제대상 품목
 - 원칙적으로 소비자대상으로 판매하는 모든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, 아래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가 되는 상품도 있음.
 - 표시가능면적이 30cm²이하인 것
 - 주류 등 영양공급원으로서 기여도가 작은 것
 - 아주 짧은 단기간에 원재료가 변경되는 것
 - 소비세법 제9조에 의한 소규모사업자(과세 대상 매출액 1천만엔 이하)
- 주의사항
 - 영양성분 표시시 실제 성분치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상품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함
 - 원재료에 대한 규격서 등 서류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영양성분에 대한 분석치나 계산 근거 자료 등 정보체계 관리에 주의가 필요시 됨

【영양성분 표시 예】

영양성분표시 식품단위당	
열량	Kcal
단백질	g
지방	g
탄수화물	g
식염상당량	g

II

통관 보류 및 해결, 폐기, 반송 사례 ('16년 1월)

월	품목명	제조사	부적합내용 및 공표일	수입자 명	조치상황
1월	살구 조정품	YOUNG IN TRADING CO.,LTD	시안화합물 31mg/kg 검출 2016.2.3	후쿠다류(주)	폐기 또는 반송 (전량보관)

위반사례 합계 /건 발생

□ 시사점

- 살구씨에서 천연 시안화합물이 발생 검출되어 위반사례로 분류된 안건으로 통상 살구씨에서는 시안화합물이 발생하기 쉬워, 위 사례와 같이 한방약재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천연 시안화합물의 검출에는 최대한 주의가 필요